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제2018-33호)

1. 관련

- 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 나.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628호)
-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

2. 우체국예금 상품 개선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번호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3호

나. 개정사항 : 기업은행MMDA의 금리 지급 기준 변경

-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4조 별지2호(이자율 조건표) 변경

다. 시행일자 : 2018. 10. 28.(일)

라. 고시방법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 게시 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붙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전문 1부.
3. (별지1) 우체국예금 약관 전문 1부.
4. (별지2) 이자율 조건표 1부. 끝.

우정사업본부장



수신자 준법감시담당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서울지방우정청장, 경인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장, 경북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장, 제주지방우정청장

주무관

권혁용

행정사무관

박해숙

금융총괄과장

이진영

예금사업단장

전결 09/27
유대선

협조자 행정사무관

代이은경

시행 금융총괄과-2655 (2018.09.27.) 접수 ()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

전화 [044-200-8418](tel:044-200-8418) /전송 050-5005-1026 / <http://www.koreapost.go.kr> / 공개